



이클레이 한국집행위원회(K-ExCom) 운영 규약

(2022년 1월 26일 개정)

제1조(명칭) 본 위원회의 명칭은 “이클레이 한국집행위원회(Korea Executive Committee)(이하 ‘한국집행위원회<K-ExCom, 케이엑스콤>’ 라 한다.)” 라 한다.

제2조(목적) 이 규약은 이클레이 세계 헌장과 정관에 의거 한국 회원 지방정부가 국제사회와 연계하여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결정 단위인 이클레이 한국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구성) 제3조(구성) 한국집행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5~7인으로 구성한다.

1. 이클레이 한국대표 지방정부의 장
2. 한국사무소 유치 지방정부의 장
3.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정책 사업의 대표
4.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

제4조(기능)

1. 한국사무소의 운영규정과 사업 방향 등 주요 정책 결정
2. 지방정부 정책 네트워크 대표로서, 지방정부의 선도적인 정책추진 견인
3. 지방정부와 국제사회를 연계하는 정책리더십의 중심으로서 역할
4. 위원 중 동아시아집행위원 추천

제5조(임원) ① 한국집행위원회를 대표하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둔다.

- ② 의장과 부의장은 한국집행위원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.
- ③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, 의장 궐위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위원의 임기) 한국집행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. 단,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집행위원회 결원이 발생한 경우, 자격 요건을 고려하여 한국사무소장이 추천하고 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집행위원으로 취임하고,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.

제7조(회의 및 의결) ① 의장, 부의장, 사무소장, 혹은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에 따라 개최하고, 한국집행위원회는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 소집한다. ② 사무소장 혹은



지정자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 후 한 달 이내 의장에게 회의록을 송부한다. ③ 한국집행위원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.

제8조(회계보고 및 결산) ①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② 한국사무소 회계는 사무소장이 관장하고, 매년 1회 이클레이 한국집행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경비 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한국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③ 승인 결과는 이클레이 한국 회원 지방정부에 공유한다.

제9조(규약 개정)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제10조(운영세칙)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한국집행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약은 2021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